

대구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113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신동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우

변론 종결 2020. 1. 30

판결 선고 2020. 2.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답 289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78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1/1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DCL925년생, 2018. 4. 13. 사망, 여성)의 딸이다.

원고에게는 3명의 여동생과 남동생 E이 있다. (2) 피고(1985년생)는 E의 아들이자, D의 유일한 친손자이다.

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2015. 3. 17. D 소유이던 경북 칠곡군 C 답 2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같은 달 3.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증여될 당시 D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 에 기초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사실을 다투는 사람이 그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판결 등참조).

(2)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살아 있을 때 유언내용과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철회된다(민법 제1108조, 제1109조).

D이 2013. 6. 4.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갑 제3호증)만으로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그 밖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D이 의사능력 없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재산에 법정상속분(1/ 5) 절반인 1/ 10비율로 유류분을 갖는다.

D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피고는 침해된 유류분 비율만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거슬러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서로 알면서 주고받은 것이라야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민법제1114조 제2문).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는, 증여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 가액을 넘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피상속인 재산이 늘지 않을 것을 내다보고 증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D이 사망하기 약 3년 전에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

다. D은 증여 당시 89세였고, 미국에서 원고와 살다가 2008. 12. 24. 귀국한 이래 피고 아버지 E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피고가 할머니인 D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았을 사정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4) 이 사건 토지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구